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104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1048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4 선고 2018가소2573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5.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4. 선고 2018가소2573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3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소나타 G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 E과 피고 C은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7. 8. 16. 20:50경 천안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제1심 공동피고 E과 피고 C이 동승한 상태로 J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 C은 자신의 형인 피고 B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B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D	2017. 8. 21.	합의금	1,300,000
E	2017. 8. 21.	합의금	900,000
피고 B	2017. 8. 21.	합의금	1,420,000

D	2017. 8. 21.	합의금	1,300,000
D	2017. 8. 25.	피고 차량 미수선 합의금	6,760,000
(주)K	2017. 8. 31.	원고 차량 수리비	615,000
(주)L-구 차륜	2017. 8. 31.	원고 차량 부품대	432,000
M	2017. 9. 26.	D 치료관계비	385,780
M	2017. 9. 26.	D 치료관계비	21,920
N병원	2017. 9. 26.	E 치료관계비	189,690
M	2017. 9. 27.	피고 B 치료관계비	21,920
M	2017. 9. 28.	피고 B 치료관계비	385,780
O	2017. 12. 22.	피고 차량 견인료	281,000
합계	12,713,090		

마.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P주식회사로부터 2017. 10. 12.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182,770원을 환수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8. 7. 25. 1,993,930원을 환수하였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어, 2018. 5. 3.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9)에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5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 C 모두 항소(전주지방법원 2018노593)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위 징역 5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8도15230)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공제금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합계 12,713,090원에서 환수금액 합계 2,176,700원을 뺀 나머지 10,536,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하거나,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은 절차상 위법한 판결이다.
- 2) 피고 B은 피고 차량에 탑승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자신의 명이나 통장 등을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3) 피고 C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미 자신이 받은 공제금 1,993,930원을 전부 반환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 또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판결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12. 27.경에, 피고 B은 2019. 3. 5.경에 이 사건 소장부분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 피고들 모두 2019. 4. 30.경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들은 제1심 법원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2019. 5. 14.에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하거나 종결할 수 있으며, 변론의 속행이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심판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서류로 피고 B 명의의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서류들, 그리고 피고 B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위 합의서에는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가 합의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1,4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 등과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B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고, 이 때 방조는 과실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 B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을 통하여 보험금 편취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계좌 양도 등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B가 피고 C가 피고 B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고 B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에게 개인정보와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B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피고 C이 편취한 공제금 중 일부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사건의 경위,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피고 B 명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이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이 제1심 공동피고 D, E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므로[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 관련 사기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공제금 합계

12,713,09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중 2,176,700원만을 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0,536,390원(=

12,713,090원 - 2,17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9.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매경

판사김혜령

판사박성수